

# 공공기관 인공지능 채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서(요지)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중  
2020년 10월 26일

## 1. 신고인

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 진보네트워킹센터

## 2. 피신고인

인공지능 채용 절차를 도입한 공공기관 13개,  
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공급한 민간기업 2개

## 3. 신고취지

인공지능 채용 절차를 도입한 공공기관 및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공급한 민간기업인 피신고인 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특히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고인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신고인들이 이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등에 의하여 비공개처분을 한 데 대하여, 귀 기관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조사와 처분에 대한 권한을 행하여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제할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

## 4. 피신고인들의 위법 사실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

가. 채용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의 적합성

○ 채용 공공기관이 채용 지원자에게 받는 동의서 항목이 답변서나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관이 채용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실제와 그 적합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# 나. 채용 지원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적절성

- 채용 공공기관이 채용 지원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채용 공공기관 다수는 동의서에서 AI면접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.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.
- 채용 공공기관 다수가 수탁자 민간업체의 반대를 이유로 인공지능으로 처리되는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탁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# 다. 얼굴인식정보나 음성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

- AI면접 등 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절차 대부분은 지원자의 얼굴인식과 음성인식, 때로는 심장박동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동의서에 명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. 위법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# 라.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준수

- 기관이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수탁자 민간업체의 경우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 이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# 마.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의 의무 준수

- 채용 공공기관이 지원자 개인정보의 인공지능 처리 위탁 사실과 그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.
- 채용 공공기관 다수는 자기관 채용에 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이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수탁자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,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.

바.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·제공의 적법성

- 채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 채용 업무를 수탁한 민간업체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·이용하고 오히려 해당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당해 기관에 제3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수탁 관계를 혼란하게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.
- 무엇보다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이 지원한 공공기관의 채용 목적 범위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 처리에 동의한 정보주체 지원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‘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’로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.
- 정보주체 지원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채용 절차에서 취약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채용 지원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엄정한 처분이 필요합니다.
- 만약 채용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학습 등 당해 채용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된다면 정보주체 지원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목적외 이용에 해당합니다.

(끝)